

다양한 형태의 FTA 체결에 따른 Spaghetti Trap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How to cope with the Spaghetti Trap of multiple FTAs effectively

최창환(Chang-Hwan Choi)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전임강사

목 차

I. 서 론	V. 결 론
II. FTA 선행연구 검토	참고문헌
III. FTA내에 Spaghetti Trap 비교 분석	Abstract
IV.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Spaghetti bowl effect that different tariffs and rules of origin in multiple FTAs have resulted in increasing the significantly additional burden for business when it comes to apply for the use of FTA preference. The wide spread of FTAs in the several years, from 2003 to 2010, has been the most important trade policy development in economically important Korea. Korea presently has 5 FTAs in effect, and made 3 additional agreements which will be expected to take effect in next year.

With the study result and expecting a growing number of FTAs in Korea in a next decade, the international trading firms will face rise of transaction costs for enterprises, particularl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to cope with multiple tariffs and rule of origins in FTAs.

To help mitigate negative effects and facilitate a more SMEs to use the FTA preference, providing new computer programs system, increasing the awareness of FTA provisions, improving business participation in FTA consultations, and SME support in light of education, and financial support are needed.

Key Words : FTA, Spaghetti Bowl effect, Rule of Origins, Tariff Preference

* 이 연구는 2010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I. 서론

최근 세계 국제무역 질서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 가속화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EU, NAFTA 등 세계 주요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역외국가로서의 반사적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설정하고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 왔다.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등 16개국과의 5건의 FTA가 발효되었고, 협상결과 미국(2007), 페루, EU(2010)와 3건의 FTA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캐나다, 멕시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협력이사회),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 동안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모형(CGE) 등을 통해 FTA가 무역창출 효과¹⁾ 등으로 교역량이 증가하고, 신규고용 창출에 기여하며 결국 전체적인 후생수준 증가를 가져 올수 있다는 점을 계량적으로 보여주었다.

한편, 기업들은 세계화에 따른 경쟁심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가공단계별 글로벌 아웃소싱 및 생산기지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각화된 국제경영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FTA 체결로 인해 동일한 제품에 대해 체약국별 상이한 관세, 관세 축소폭, 원산지 규정 등으로 인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비용 증가 및 규정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행정비용 등이 추가로 발행하며, 특히 광범위한 조식이 없어 대응하기 곤란한 중소기업들에게 상이한 원산지 증명을 맞추기 위해 생산설비 등을 교체하는 등의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한 일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FTA가 많아지면 국가별로 다른 관세, 원산지 규정 등을 충족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관세 혜택을 포기하거나 혹은 잘못된 증명서 제출로 인해 규제당국으로부터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위험성에 노출된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면을 하나씩 풀어내기 어렵다는 데서 유래한 소위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나라 기업체들에 대한 실

1) 무역창출 효과는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제거 등을 통해 기존 교역량보다 무역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며, 무역전환 효과는 특정국가와 FTA를 맺으면서 해당국가 제품 가격이 낮아져 예전에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던 것들이 FTA를 체결한 국가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야 FTA 체결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조사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FTA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각 협정 기준적용의 불명확성, 복잡성, 혼란 및 차별적 적용 등으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간 이 분야의 연구는 FTA 체결 확대가 교역량 증대를 통한 고용창출과 후생수준 증대 등의 긍정적 측면에만 집중적으로 조명된 경향이 있으나, 대표적인 FTA의 부정적인 측면인 스파게티 볼에 대해서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던 면이 있었다. 특히 최근 우리무역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경제권인 미국, 인도, EU와의 FTA 체결 협정문을 모두 포괄해서 FTA 장애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서명된 총 8건의 FTA 체결내용 중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스파게티 볼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FTA 특혜관세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FTA 현황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III장에서는 스파게티 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에 합의된 8건의 FTA 내용을 검토하였다. IV장은 정책적 시사점으로 FTA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결론으로 이상과 같은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II. FTA 선행연구 검토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중을 이루고 있다. 현재 발효 중인 276건의 지역협정을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47년부터 94년까지 91건에 불과하던 것이 95년 이후 2010년 4월 현재 185건이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²⁾.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특히 WTO 출범(1995.1)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2007년 기준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WTO : <http://www.wto.org> 2010년4월23일 현재 지역무역협정(RTA) 현황표 참조

〈표-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2004년 ~ 2010년 발효	교역규모가 작은 상대국과 체결
체결	미국, EU, 페루	국회비준 절차	교역규모가 큰 경제권과 체결
협상진행	캐나다, GCC,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자원부국에 대해 협상진행
협상준비	중국, 일본, MERCOSUR, 러시아, 이스라엘, SACU		아시아권 경제협력

자료 :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new/ftakorea/ftakorea2010.asp> 참조

이러한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고,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시장 확보와 상대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FTA를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출발점으로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등 16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2007.6월에는 미국과의 FTA에 서명하였다. EU와의 FTA 협상은 2009.7월 종결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 터키 등 13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도 협상준비에 착수한 실정이다. 기존에 체결된 FTA 혹은 체결 예정인 협정에 대한 경제성과 분석은 다방면에 걸쳐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명진호(2010)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를 평가한 결과 지난 6년간 대칠레 교역량은 3.3배(연평균 증가율은 22.5%)에 달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 세계 교역증가를 10.7%를 두배 이상 상회했으며, 한·칠레 FTA가 국내생산 및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칠레 수출에 의한 생산유발액은 2003년 13.2억 달러에서 2009년 44.9억 달러로 3.4배 증가했고, 취업자 유발인원은 6,041명에서 23,708명으로 3.9배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³⁾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9개 연구기관(2010)이 발표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경제의 실질 GDP가 장기적으로 최대 5.6% 증가시킬 것이며,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 및 소득증대를 통해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GDP 대비 약 3.8%인 320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고용부분에 있어서도 취업자를 최대 253천명까지 확대시킬 것이며, 무역수지도 연평균 3.61억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이라 전망하였다.⁴⁾

3) 명진호, “한·칠레 FTA 6주년 평가”, 국제무역연구원, 2010.

그러나 FTA 체결로 인해 무역량이 증가하고 국가적 후생이 증대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협정내용이 상이한 무역협정 체결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동일한 생산제품에 대해 계약국별로 수출할 경우 상이한 관세 감면내용, 원산지 규정 등으로 인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생산비용 증가 및 FTA 협정내용 입증을 위한 행정비용 등이 추가로 증대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Bhagwati(1995)는 처음으로 호혜적 무역협정과 관련해서 Spaghetti Bowl 문제를 언급하였다. 스파게티 접시처럼 무역에 있어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관세 등의 차별적 호혜를 담고 있는 FTA 협정의 급격한 증가는 무역업체에게 많은 불가피한 비용 발생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더욱이 생산의 세계화로 인해 그 상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제품을 명확히 판단하기가 점점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들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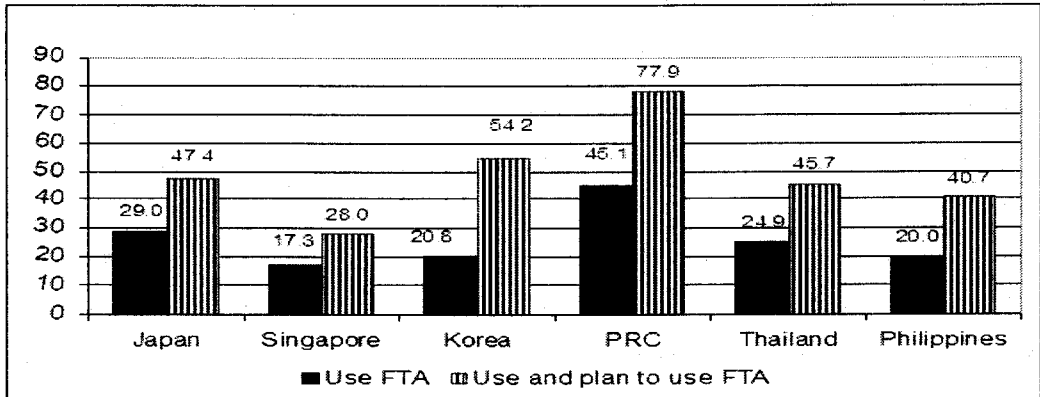
일본무역진흥원(JETRO, 2007)은 동아시아권에서 체결된 FTA 활용도를 알아보기 위해 97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 이를 이용하는 기업은 약 30%에 불과하며, 더욱이 무역특혜를 위해 동아시아 FTA의 다양한 원산지 규정 등의 요건을 맞추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⁶⁾

Kawai & Wignaraja(2009)는 아시아 609개 기업들의 실증분석을 통해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FTA가 기업들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특히 중소기업에게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무역에서의 FTA 체결 국가별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국의 복잡한 원산지 규정 및 다양한 관세감면 규정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며 이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9개 기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2010. 10.

5) Bhagwati, J.N., “US Trade Policy : The Infatuation with FTAs. Columbia University Discussion Paper Series 726.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95.

6) JETRO, “FY2006 Survey of Japanese Firms’ International Operations”. Report, Tokyo. 2007.



자료 : Kawai & Wignaraja, 2009, p.11.

[그림-1] 아시아 국가 기업들의 FTA 활용도 조사

실제 기업들의 활용도 조사에 따르면 FTA가 시장확대 및 영업환경 개선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무역에 관한 다양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FTA를 이용하는 것은 한국은 20.8%, 일본은 29.0%, 싱가포르는 17.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국수 접시(Noodle Bowl) 효과라 하였는데 개념상 Spaghetti Bowl 효과와 같다고 볼 수 있다.⁷⁾

강진석(2006)은 주요국의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완전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경기준(세번변경,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등)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EU등 세계에서 무역비중이 큰 주요국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⁸⁾

최장우(2007)는 FTA의 주요 핵심은 당사국 간에 관세철폐와 원산지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특히 원산지 규정은 FTA 체결국별로 상이하고 이행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역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비관세 무역장벽의 하나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⁹⁾

김한성 외(2008)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원산지 규정을 비교하였고, 그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 기업들이 상이한 FTA 원산지 규정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¹⁰⁾

안재진(2008)은 FTA 체결확대에 따른 부정적인 문제 중 원산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복잡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행정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7) Masahiro Kawai & Ganeshan Wignaraja, "The Asian Noodle Bowl: Is It Serious for Business?", ADBI Working Paper Series, No 136, 2009.

8) 강진석, 주요국의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창업정보학회지 제9권제4호, 2006, pp.65-89.

9) 최장우, "한-FTA 체결국간 원산지제도 비교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제8권 제4호, 2007.

10) 김한성·조미진·정재환·김민성, "한국 FTA 원산지 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 pp.94-95.

를 상쇄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고, 따라서 원산지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였다.¹¹⁾

고영제(2008)는 한국이 기 체결한 5개의 FTA를 대상으로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해 엄격성 지수(RI: Restrictiveness Index)¹²⁾를 적용하여 각각의 FTA별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지수를 산출하여 각각의 FTA별로 원산지 규정이 갖는 무역제한 정도를 계량화 하였다.¹³⁾

정인교(2009)는 우리기업의 FTA 활용도 조사 연구에서 한국기업은 9.5%만이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관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관심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FTA 적용요건 충족이 어렵고 더욱이 기업들이 FTA 내용을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적인 것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협정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기업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FTA 인식수준을 높이고 이를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다.¹⁴⁾

노덕률(2010)은 FTA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지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별로 스파게티 보울 현상의 주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체결년도, 수입건수,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은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공도, 수입건당 금액은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수입건수가 많고 경험이 축적될수록 원산지규정을 이해하고 특혜관세 혜택을 수혜 하는데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⁵⁾

11) 안재진, "FTA 체결확대에 따른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과 원산지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 34(1), 2008.

12) Estevadeordal는 NAFTA 원산지 규정을 분석하는 논문에서 최소 1에서 최대 7까지의 범위로 엄격성 지수를 구분하고 지수요건을 설정하여 FTA의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분석에 활용함

13) 고영제,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과 시사점",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8.

14) 정인교,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 조사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2009.

15) 노덕률,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에 있어 스파게티보울 현상의 결정요인", 관세학회지 제11권 제2호, 2010. pp.1-21.

Ⅲ. FTA내에 Spaghetti Trap 비교 분석

1. 체결된 FTA별 원산지 기본원칙 비교

1) 원산지 개념과 원산지 확정원칙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있어서 특혜무역협정(PTAs :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성장·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지역 또는 국가를 의미한다.¹⁶⁾ 일반개념에 의하면 지역이란 의미는 한 국가의 영역을 의미하지만 지정학적 실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한 국가내의 특정지역이나 국경선 밖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¹⁷⁾ 그래서 원산지는 생산된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동식물의 경우 성장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고 제조가공품의 경우에는 생산을 비롯하여 제조 및 가공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한다. 즉, 원산지규정(ROO : Rule of Origin)이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로서 물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국제법규, 법령, 행정규칙이라 할 수 있다.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분된다. 특혜원산지규정은 교역 상대국간의 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행정적인 제도로 GATT 1994 제1조 원칙을 적용받지 않으며 특정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베푸는 자유무역지대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등 특정국가군을 상대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수혜국을 정확히 식별하여 비수혜국이 무임승차(free-riding) 혜택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특혜프로그램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반면 비특혜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 이외의 모든 것으로 무역정책상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제한(safeguards),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및 상계관세(couterailing duties)부과,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무역통계 작성 등 무역정책상 물품의 원산지를 구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원산지 식별은 물론 제조대상이 된 상품의 유사상품이나 국내산업의 존재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바로 비특혜원산지규정 이다.

1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호] 제 2조 4항.

17) 최홍석·류원택, 「최신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무역관세연구원, 2004, p.3.

최근 전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과 정부나 정부기관의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각국이 정부 조달 부문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일종의 비관세장벽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개방을 촉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즉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특히 원산지규정의 경우 계약상대국 이외 국가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 특혜관세 부과에 따른 계약국 간 교역확대, 관세혜택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특혜 원산지규정이 늘어날수록 잠재적으로 무역왜곡이나 무역장벽의 효과 역시 증대될 수 있어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원산지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¹⁸⁾

원산지 확정 원칙(특혜원산지 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보충기준 등 주로 3가지로 나누어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서는 완전생산 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은 어떤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협정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은 일부 농산물, 광산물 등에 대해서 주로 적용된다.

〈표-2〉 원산지 판정기준

대기준	세부적 기준	내 용
완전생산기준		- 모든 생산과정이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할 경우
실질변형기준	세번변형기준	- 특정의 체계적인 품목표상의 관세분류 변경에 의한 방식 - 생산품과 사용원재료에 적용되는 관세분류가 다를 경우 실질적 변경이 있다고 인정 - 관세분류의 변경이 실질적 변경 등에 있어서 결정적이지 않은 경우 및 추가적 조건을 결정하는 예외품 표를 통상적으로 수반
	부가가치기준	- 가격비율에 의한 방식 - 추가된 제조 또는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실질적 변경이 있다고 인정
	주요공정기준	- 제조 작업 또는 가공 작업표에 의한 방식 - 충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조작업 또는 가공이 행해진 경우 실질적 변경이 있다고 인정

자료 : 대외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08-09) 자료 참조

18) 한홍렬, "NAFTA 원산지 규정의 의의와 정책시사점", KIEP, 1994, p.10.

둘째,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은 원료와 부품으로부터 제품이 제조되는 생산 과정 중에서 제품의 본질적 성격을 부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처럼 어떤 제품의 본질적인 성격을 창조하는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에 원산지가 부여된다는 원칙이다. 여기에는 3가지 세부적인 내용으로 분류된다.

먼저 세번변경 기준이란 특정의 체계적인 품목표상의 관세분류 변경에 의한 방식을 말하는데, 생산품과 사용원재료에 적용되는 관세분류가 다를 경우 실질적 변경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⁹⁾

부가가치기준이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²⁰⁾ 주요공정기준은 상품의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주요한 생산공정이 일어나거나 특정한 재료를 사용한 국가에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음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특정 재료의 사용에 여러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체결된 FTA별 원산지기준 비교

가.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은 농업, 어업, 광업제품 등에 대해서는 매우 유효한 평가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세계화시대에 다양하고 복잡한 무역환경 하에서는 그 적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EFTA, 한-ASEAN, 한-미국, 한-인도, 한-페루, 한-EU FTA에서는 완전생산기준만을 적용하지만,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완전 역내산은 아니지만 완전생산 간주기준을 적용하여 그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영해 내에서 행하여진 어로 또는 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제품은 연안국을 원산지로 인정하고, 영해 밖의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 또는 선상가공품의 경우 선박이 자국 국적을 지니고 있을 때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한-EFTA, 한-EU FTA의 경우 선박의 국적을 결정짓는 요건에 대해 기국요건(vessel flying the flag of a party)만을 규정하여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을 자국국기를 계양했다면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FTA의 경우 기국요건과 동시에 등록요건(vessel registered of recorded with a party)을 규정하여 자국에 등록 또는 등기된 선박이면 서 자국 국기를 계양해야만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1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0호] 제2조 9항

2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0호] 제2조 10항

〈표-3〉 FTA 원산지규정의 완전생산기준 비교

구 분	완전생산기준	자국선박 요건
한-칠레	완전생산기준 + 완전생산간주기준	기국요건 + 등록요건
한-싱가포르	완전생산기준 + 완전생산간주기준	기국요건 + 등록요건
한-EFTA	완전생산기준	기국요건
한-ASEAN	완전생산기준	기국요건 + 등록요건
한-미국	완전생산기준	기국요건 + 등록요건
한-인도	완전생산기준	기국요건 + 등록요건
한-EU	완전생산기준 + 완전생산간주기준	기국요건 + 등록요건

자료: 각 협정문을 토대로 작성

나. 실질변형기준

현재 한국이 타결한 8개의 FTA에서는 실질적 변형을 기준으로 하는 주요 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주요공정기준이 모두 사용된다. 각 품목의 특성에 따라 주요기준이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혼합되어 사용되며 주요공정기준의 경우 섬유 및 의류 품목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다른 기준과 혼합되어 사용된다.

(1) 세번변경기준(CTC)

형태가 다양하지만 세번변경요건은 어느 기준보다 객관적이고 예측가능성이 높아 FTA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이다. 만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나 혹은 부품의 세 번과 일정수준 이상 상이한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그 제품의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세번변경 기준은 HS(Harmonized System)에 기초하여 2단위, 4단위, 6단위의 등을 기준으로 이용되거나 각 단위의 적용비중에 따라 부가가치기준 및 주요공정기준을 병행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품목별 구체적인 수준은 FTA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 통상 2단위 변경기준(CC Rule : Change of Chapter)이 가장 엄격하며, 4단위 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CTH)가 그 다음 엄격하며, 6단위 변경기준(Change of Tariff Subheading; CTSH)이 비교적 완화된 기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 FTA 체결국별 주요품목의 세번변경방식 원산지결정 기준

품명	HS번호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소주	2208.90	CTH+RVC(45%)	CTH	CTH	CTH or RVC(40%)	CTH
가죽 핸드백	4202.21	CC	CTH	CTH	CTH or RVC(40%)	CTSH
휴대폰	8517.12	CTH, except from 8529 or CTH+RVC(45%)	CTH+RVC(55%)	CTH or MC(50%)	CTH or RVC(40%)	-
TV	8528.70	CTH or RVC(45%)	CTH+RVC(45%)	CTH or MC(50%)	CTH or RVC(40%)	-

자료: 안재진(2008) 자료 참조

(2) 부가가치기준

품목별 특징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 혹은 가공 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그 제품 가치의 일정부분 이상일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이 바로 부가가치기준이다.

부가가치비율 산출에 필요한 기준가격, 산정공식 및 원산지를 인정하는 품목별 부가가치비율은 FTA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기준가격과 관련하여 한·EFTA FTA에서는 Ex-works(공장도가격)이 부가가치 산출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사용되지만 다른 FTA에서는 FOB(본선인도가격)가격이 기준으로 사용된다. 부가가치비율 산정공식으로는 공제법과 집적법이 두루 사용되나 한·EFTA의 경우에는 MC(Import Contents)방식을, 한·미국 FTA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순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부가가치 산출 공식

$\text{집적법} = \frac{\text{원산지 재료}}{\text{조정가치}}$	$\text{공제법} = \frac{\text{조정가치} - \text{비원산지 재료}}{\text{조정가치}}$
$\text{순원가법} = \frac{\text{순원가} - \text{비원산지 재료}}{\text{순원가}}$	
순원가 : 총비용 - (마케팅 비용+로열티+운송비용 등)	

또한, 부가가치의 허용기준은 한·싱가포르 FTA에서 45~55%, 한·EFTA FTA에서 40~70%

로 비교적 높은 부가가치비율을 요구하고 있으며 타 FTA에서도 최소 35%이상의 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후, 이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현재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100%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역내 추가가공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역내의 추가가공의 부가가치를 제외한 수입 원재료의 가격이 비원산지 재료가격으로 산정된다.

<표-5> FTA 체결국별 부가가치방식에 의한 원산지결정 기준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미국	한인도	한EU
기준가격		FOB	FOB	Ex-works	FOB	FOB	FOB	Ex-works
산정공식		공제법/집적법 선택	공제법	MC방식	공제법/집적법 선택	공제법/집적법 선택 순원가법	공제법	MC 방식
부가가치비율		공제법:45% 이상 집적법:30% 이상	45%~55%	40%~70% (공제법 환산시)	40%이상	35%이상	35%~60%이상	45%이상
역내추 가가공 품	원산지 인정	100%인정	100%인정	100%인정	100%인정	100%인정	100%인정	100%인정
	원산지불 인정	국산재료비 공제	국산재료비 공제	국산재료비 공제	국산재료비 공제	국산재료비 공제	국산재료비공제	국산재료비공제

자료 : FTA는 원문내용 참조

(3) 주요공정기준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 특정공정기준은 주로 의류제품과 직물제품에 적용되며, 세번변경 기준과 병행하여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류제품의 경우 초기에 체결된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CC(Change of Chapter)요건과 결합되어 사용되며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미 FTA에는 원사의 생산지를 따져 원산지를 정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규정인 얀포워드(Yam Forward)가 있다. 직물제품의 경우에도 초기에서 후기로 접어들수록 비교적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테스트 방식의 경우 대부분 Positive방식을 사용하나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Negative방식을 혼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표-6〉 FTA별 주요공정기준 적용물품 비교

품명	세번부호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미국	한인도	한EU
의류 제품	제61류 ~ 제62류	CC+국산원 단요건+재 단·봉제 요건	CC+재단· 봉제요건	CC+재단·봉제 요건	PSR에 개별적으로 규정	원사기준	CTC	화학반응, 정제공정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
직물	제50류 ~ 제60류	CC	CC	CTH 또는 염색 또는 날염		품목별로 규정		
테스트방식		Positive/Ne gative	Positive/Ne gative	Positive	Positive	Positive	Positive	Positive

자료 : FTA는 원문내용 참조

2. 체결된 FTA별 보충 원산지 기준 비교

1) 분류 및 내용²¹⁾

앞서 언급된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이외에도 그 기능을 보완하고 결정기준의 유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보충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① 미소기준

미소기준이란 세번변경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일정수준 이하이면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적 규칙이다.

② 누적기준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재료를 역내 재료로 간주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역내에서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를 합산하는 부가가치누적과 협정 상대국의 재료를 국산재료로 인정하는 재료누적 및 상대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정누적이 있다. 예를 들어 한·ASEAN FTA에서 한국에서 한국산 부품과 인도네시아산 부품을 동시에 사용하여 전기면도기를 생산,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국산과 인도네시아산 부품 모두를 역내산 재료로 인정한다.

21)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 정보 참조

③ Roll-up/흡수원칙

후속 변형(subsequent transformation)을 위해 투입되어 사용되는 수입 원재료가 역내에서 특정한 가공공정(추가가공)을 충족한 후 최종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경우, 이를 원산지 물품으로 취급하여 부가가치비를 계산시 역외산 재료가격에 포함 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주로 중간재 제품²²⁾에 적용된다.

④ 불인정공정

혼합, 건조, 포장 등 단순하고 낮은 수준의 공정들의 모임으로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공정만 이루어진 경우,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만족되더라도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며 설령 HS번호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⑤ 역외가공 원산지기준

교토협약(Kyoto Convention) 특별부속서 F의 제2장(Special Annex F Chapter 2)에 특별통관제도의 하나로 규정된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은 제조, 가공 등을 목적으로 일시 수출된 물품이 가공작업을 거쳐 수입관세 및 재세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이나 면제의 조건으로 재수입 되는 것이다. 즉, 간단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반제품을 생산 하여 중국에 수출하여 조립한 후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베트남에 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부속품, 예비 부분품, 공구 등에 관한 기준

부속품, 예비 부분품 및 공구의 경우,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적인 부속품, 예비 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될 경우 이들의 원산지를 본제품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반면, 소매판매용 포장용품 및 포장용기(포장지, 병, 캔 등)의 경우 내용품과 같은 품목번호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하게, 가스통, 컨테이너 등(계속사용 수송용 용기)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별개의 품목번호로 분류하는 경우, 이들 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고려하지 않는다.²³⁾ 둘째, 간접재료 또는 중립요소의 경우 생산국가에 관계없이 역내산 재료로 간주한다. 셋째, 대체가능물품²⁴⁾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해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과 같은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22)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s)란 상품의 생산자가 최종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자체 생산자료를 의미

23) 안재진, "FTA 체결확대 원산지규정 중요성과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연구", 사회과학연구, 2008.

24) 물품의 특성, 기능, 구조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사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 또는 재료(곡물, 과일, 석탄 등의 산불과 불트, 너트, 베어링, 타이어 등이 해당)

⑦ 직접운송법칙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경우에만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써, 제3국에서 선적, 추가가공을 거친 물품은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²⁵⁾ 이외에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조합기준과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기준 중에서 한 가지만 만족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선택기준, 제3국의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추적심사 등이 있다.

<표-7>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구분	세부적 기준	내 용
보충기준	미소기준	- 비원산지재료의 최대 비율을 특정하는 방식 - 실질변형기준에 의해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 - 비원산지재료의 최대 가치가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지 않으면 인정
	누적기준	- 부가가치누적, 재료누적, 공정누적으로 구분 -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재료를 역내 재료로 간주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
	Roll-up / 흡수원칙	- 후속변형을 위해 투입되어 사용되는 수입원재료가 역내에서 특정한 가공공정을 충족한 후 최종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경우, 이를 원산지 물품으로 취급하여 부가가치비율 계산시 역외산 재료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 조건
	불인정공정	- 물품의 본질 또는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의 공정은 HS번호가 바뀌어도 원산지 불인정
	역외가공 원산지기준	- 제조, 가공 등을 목적으로 일시 수출된 물품이 가공작업을 거쳐 수입관세 및 재세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이나 면제의 조건으로 재수입 되는 것
	부속품, 예비부분품, 공구 등	- 기계, 기구, 장치, 차량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며 통상적인 부속품, 예비 부분품 및 공구로 인정될 때 원산지를 본제품과 동일하게 인정 - 포장품 및 간접재료, 대체재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둠
	직접운송법칙	-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규정 - 제3국에서 선적되었거나, 추가 가공이 되었거나, 제3국으로 수출된 후 수입된 물품은 원산지 불인정

자료 : 대외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08-09) 자료 참조

25) 성윤갑, “원산지 표시제도: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을 통한 평가”, 『정책학원론』, 2008.

2) 체결된 FTA별 보충적 원산지기준 비교

원산지를 판단하는 보충적 원산지 규정도 우리가 체결한 FTA별로 모두 상이하다. 한·EU, 한·미, 한·인도 FTA등 다수는 10% 미만의 미소기준을 허용하고 있지만, 한·칠레 FTA의 경우에는 가격기준으로 8% 미만인 경우에만 비 역내산 부품을 인정하고 있다.

양자간 누적기준은 일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나 재료가 상대국의 물품에 포함되거나 결합되는 경우 그 품목이나 재료를 상대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우리가 체결한 FTA 대부분이 양자간 누적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한·EFTA의 경우에는 관련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종의 역내국간 다자누적에 대한 특례조항을 추가로 도입하였다. 즉, 역내국간 물품의 변형 없이 거쳐간 경우에는 실제로 그 제품을 제고한 국가를 원산지로 규정하는 제도이다.

Rollup 원칙도 우리가 체결한 FTA 대부분이 이를 채택하고 있으나, 한·EFTA, 한·인도, 한·EU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 인정되는 물품에 관해서는 현재 타결한 FTA 협정문 모두 본제품의 원산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예컨대 진공청소기에 붙어서 판매되는 집진봉지는 본 제품인 진공청소기의 원산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직접운송원칙에 대해서는 체결된 대부분의 FTA 협정문이 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한·칠레는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한·미 FTA도 명시적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

<표-8> FTA별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미국	한인도	한EU
미소기준	8%미만 (FOB)	10%미만 (FOB)	10%미만 (Ex-works)	10%미만 (FOB)	10%미만 (AV)	10%미만 (FOB)	10%미만 (Ex-works)
누적기준	양자간누적	양자간누적	양자간누적+ 특례조항(역 내국간)	양자간누적	양자간누적	양자간누적	양자간누적
Rollup/흡수 원칙	roll-up (중간재)	roll-up (중간재)	명시적규정 없음(실질적 roll-up 규정사용)	roll-up (중간재)	roll-up (자가생 산품)	명시적규정 없음	명시적규정 없음
불인정공정	예시방식	예시방식	열거방식	열거방식	명시없음	명시없음	명시없음
역외가공 원산지 기준	제한적 시행	제한적 시행	제한적 시행	제한적 시행	제한적 시행	명시없음	명시없음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미국	한인도	한EU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등	세번변경(본제품원산지) 부가가치(계산시 포함)	세번변경(본제품원산지) 부가가치(계산시 포함)	본제품 원산지	세번변경(본제품원산지) 부가가치(계산시 포함)	세번변경(본제품원산지) 부가가치(계산시 포함)	세번변경(본제품원산지) 부가가치(계산시 포함)	
직접운송 원칙	명시없음	명시	명시	명시	명시없으나 실질적으로 통용	명시	명시

자료: 각 협정문에서 참조하여 작성

3. 체결된 FTA별 원산지 유효기간 및 증명발급 방식 비교

1) 유효기간 비교

한·칠레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서명된 날로부터 2년까지 유효²⁶⁾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FTA특례법 시행령)제2조 3항을 살펴보면,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싱가폴, 한·EFTA의 경우에는 협정상에도 1년간 유효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싱가폴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이고, 한·EFTA의 경우에는 자율발급²⁷⁾(치즈는 예외)으로서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상품무역협정문 부록 I의 제10조 1항을 살펴보면, 원산지증명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만 유효하다.

26) 한·칠레FTA관세특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참조

27) EFTA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치즈의 경우에는 기관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표-9> 원산지 유효기간 및 원산지 증명발급 방식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미국	한인도	한EU
증명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발급자 (기관)	수출자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 관리원	수출자	세관, 상공회의소 (개성공단:세관)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증명서 서식	양국간 통일 증명서식	국별 증명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통일증명서식-A K서식	정형화된 양식없음	통일증명서 식-KIN서식	송품장신고 방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6개월	4년	1년	12개월
사용언어	영어사용원칙				영어, 한글	영어사용	

자료 : 각 협정문을 토대로 작성

2) 증명발급 방식 비교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은 크게 기관 발급제 혹은 자율발급제 등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기관 발급제를 살펴보면,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간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이다.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협정에서 기관발급 증명서로 하는바 싱가포르의 경우 세관이외에 별도로 위임기관으로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통보한 사항이 없는 상태로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유효하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협정에서 기관발급증명서로 하는바 아세안 회원국가의 세관 및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율발급제는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다. 다만, 당해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수출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할 것을 포함해야 한다.

한·칠레 FTA의 경우 협정에서 수출자 자율발급증명서로 하는바 당해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출자의 명의로 작성·서명하고,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출한 서류(원산지통보서)를 근거로 하여 수출자가 작성한다.

한·EFTA FTA의 경우 협정에서 수출자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이 아니라 원산지신고서(원산지신고문안을 INVOICE 등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것으로도 같음)를 작성하는 특징이 있다.

IV. 정책적 시사점

FTA별로 통일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시 다발적인 FTA 정책으로 인해 협정 상대국과의 교역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원산지규정 등의 난립으로 수출업체에게 많은 추가적인 비용발생 우려가 있다. 이는 기업들이 기 체결된 FTA를 활용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스파게티볼 효과를 기존 체결된 FTA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한다.

1. One-stop 처리 가능한 전산 시스템 구축

다양한 형태의 FTA로 인한 스파게티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역업체들이 국내외 어느 곳에서나 복잡하고 다양한 FTA 내용에 맞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특혜관세율 등을 한번에(One-stop) 처리를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정부는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개정²⁸⁾을 통해 원산지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생산 공정분석, 거래형태 분석, 품목분류 및 부가가치 계산 등의 업무보조를 위해 국제원산지정보원을 설립하는 등 난맥상과 같은 다양한 FTA 기준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PASS²⁹⁾라는 전산프로그램을 각 무역업체에 제공하여 기 체결된 FTA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업체들의 활용도는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로 국제무역연구원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자료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기업의 80% 이상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전체적으로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점과 활용방법 및 활용을 위한 서류구비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이유였다.³⁰⁾ 따라서 정부는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모든 무역업체가 활용

28) 관세법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5(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의 위탁) 참조

29) http://www.origin.or.kr/new/ftapass/in_guide.vm 참조

할 수 있도록 FTA 정보관리 전담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과 활용도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기술을 보유한 국가로서 정부가 E-Trade 시스템 구축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광범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FTA 체결국이 급증함에 따라 아무리 정부기관이 대응 한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부분의 전문가 집단을 육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심종석(2010)은 개별 FTA에서 각국별 원산지 판정기준이 상이하고 그 내용 또한 복잡하여 때로는 당해 원산지 규정으로 인하여 FTA 수출기업이 그 활용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무역상 single window 기반 uTradeHub에 FTA 기업이 FTA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보다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³¹⁾

미국의 경우에는 샌들러 앤 트레비스(Sandler & Travis Trade Advisory Service) 인터태셔널 비즈니스 트레이닝(International Business Training)과 같은 민간기관이나 중부 뉴욕 생산자조합(MANCY, Manufactureres Association of Central New Yo가)과 같은 협회 혹은 브래들리 대학(Bradley University)과 같은 교육기관 등이 FTA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원산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샌들러 앤 트레비스는 Trade VIA라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NAFTA, GSP, 미-호주 등 다양한 협정별로 무역에 필요한 FTA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그 시스템 상에서 적격성 여부를 확인뿐만 아니라 문서보관 업무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다.³²⁾ 우리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과감히 민간부분에 일정부분 수익성을 보장하여 이러한 프로그램 제공업체가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FTA 대상국별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FTA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정내용 파악과 활용의지가 요구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8개의 FTA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들이

30) 국제무역연구원(2008) 자료 참조

31) 심종석(2010), "FTA 원산지 관리체계 분석을 통한 uTradeHub상 e-C/O 관리시스템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제11권제2호, 2010.

3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진개서", (2008), pp.183-4 참조

FTA를 전담할 부서신설이나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정부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기업들의 FTA의 특혜관세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자체적인 노력이 없이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생산구조상 80%이상의 수출 중소기업이 대기업 납품을 통해 수출을 하고 있다. 완제품을 수출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FTA 체결국 시장으로 수출시 제품의 역내산 인정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중간재와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협력 중소기업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발효가 목전에 와 있는 미국, EU, 인도 등 거대시장과의 FTA를 놓고 볼 때 특혜관세 혜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도 기업 간 협력이 중요한 이유다.

〈표-10〉개별 중견·중소기업 FTA 활용사례

기업	사례
더페이스샵코리아	- 한·아세안FTA 체결이후 OEM 생산지를 일본에서 태국으로 변경 - 효과 : 8%관세 → 무관세(클렌징 품목에서만 연간 6억 원 절감)
이노센트가구	- 한·아세안FTA 체결이후 완제품 수입선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전환 - 효과 : 관세혜택을 적용하여 가격경쟁력 제고(제품가격 10%인하)
이건산업	- 칠레에 합관공장을 설립하여 칠레가 FTA를 체결한 EU, 미국 멕시코 등에 역내 수출(타국가간 FTA를 활용) - 효과 : 경쟁국인 중국, 말레이시아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을 갖춘 현지법인매출 722만 달러(10년전) → 4,200만 달러(지난해)
제주플라워	- 한·칠레 FTA를 활용 화훼구근(알뿌리) 수입처를 네덜란드에서 칠레로 변경 - 효과 : 관세효과로 구근 1개당 16원을 절감

자료 : 전경련, 「경기회복기를 대비한 중소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자료집, 2009. 10. 22자 보도자료 참조

반면, FTA 특혜관세를 제대로 활용한 기업들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다. 더페이스샵, 이노센트가구, 이건산업 등이 대표인데, 더페이스샵은 한·아세안 FTA 체결 이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국가를 일본에서 태국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클렌징 품목에서만 연간 6억원 가량의 관세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기 체결된 FTA를 잘 활용하면 수출가격 경쟁력 강화와 수입원가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³³⁾

따라서 중소기업들도 FTA 특혜를 받기 위해 무역실무, 어학능력을 비롯해 FTA 원산지 규정, HS 품목분류, 원가회계 등 여러 분야의 능력을 갖춘 인력을 스스로 양성해야 한다. 수출

33) 전경련, “전계서”, 참조

계약 단계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회사 자체적으로 FTA 원산지 판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 및 원가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원산지 규정 및 복잡한 부가가치 기준 충족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시 초기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전문 회계법인·관세컨설팅법인 등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저렴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무역학과 조차 FTA과목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 따라서 미래 기업의 인력수요에 맞추어 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다.³⁴⁾

3.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속적 홍보를 통해 FTA 활용도 제고

우리나라 정부와 관계기관의 집중적인 홍보와 가이드가 다른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점도 기업의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FTA 활용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과 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보다 5~10% 정도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들 나라의 경우 기업의 특혜관세 활용 지원에 중앙부처와 관계기관등 공공부문의 지원비중이 일본 51%, 태국 74.3%로 우리나라의 27.5%에 비해 높다. 이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집중적인 홍보와 가이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활용도가 높은 여타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면이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대기업의 경우 경제단체들이 대기업집단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규모가 영세하고 자금여력이 풍부하지 못하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FTA를 활용에 대한 홍보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최근 들어 민간부문의 유관단체들과 관세청, 코트라(KOTRA) 등이 전국 순회 행사를 통해 FTA 원산지결정기준 설명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기업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ASEAN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ASEAN 국가내 생산기지를 마련, 원재료 수입시 역내 수입관세 혜택은 물론 완제품을 다시 ASEAN 시장으로 재수출 할 때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FTA를 활용해 수입비용 절감과 수출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경우다.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 등이 이 같은 사례를 준용해 원산지 결정 기준 등 FTA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고

34) 최근 기획재정부에는 대학내 FTA 강좌개설 지원사업 공고(2010. 11. 15)를 통해 대학내 FTA 관련 실무지식 습득을 통한 FTA 활용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시행중에 있음.

있는 만큼 앞으로 기업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4. 향후 FTA 협정 체결시 기준의 일관성 견지

향후 우리나라 FTA 체결은 협상진행이 6건, 협상연구가 7건으로 지금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고 다른 경쟁국들도 FTA를 확대할 것임에 따라 다수 국가와 FTA를 교차 체결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은 명확해 보인다. 따라서 체결 대상국마다 우리와의 교역패턴, 수출입 업종, 현지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의 형태와 규모 등 다양한 부문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협정체결 자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체결했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를 위하여 향후 추진되는 FTA 협상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우리나라의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원산지 증명 간소화를 위한 방안도 협상 전에 미리 마련하여 업계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협상이 타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일관성은 상대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위한 비용이 큰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FTA 체결 확대가 주 목적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으로 FTA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하며, 더욱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후발 FTA보다 협정조건이 불리하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이라는 당초 취지도 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FTA 체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거대시장과의 교역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과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V. 결 론

FTA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이러한 무역증대를 통해 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의 후생을 증대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제로 WTO 가입 회원국 중에서 FTA를 1건이상 체결한 나라가 대부분일 정도로 FTA는 국제통상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FTA 체결효과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으며, FTA 체결로 인한 교역량 증대, GDP 증가, 고용창출 효과 등 많은 기대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FTA 체결국가가 많아지면서 각각의 FTA에서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수출입 기업에도 상이한 규정이 적용되는 등 복잡한 규정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스파게티 볼 문제점이 나타난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규정 적용에 필요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 규모의 무역업체들은 이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거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EU외의 FTA를 정식 서명함에 따라 총 8개 경제권과 FTA를 발효 또는 협상을 타결한 국가가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스파게티볼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은 각각의 FTA 특혜관세 수혜를 보기위해서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각각의 규정을 모두 맞추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실제로 FTA 특혜관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렵게 체결한 FTA에 대한 특혜관세를 이용률을 제고하고 다양한 형태의 FTA 부작용인 스파게티볼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무역업체들이 수출품목과 관련된 다양한 FTA 규정을 국내외 어느 곳에서나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보급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기준으로 체결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FTA 특혜를 받기 위해 무역실무, 어학능력을 비롯해 FTA 원산지 규정, HS 품목분류, 원가회계 등 여러 분야의 능력을 갖춘 인력을 적극적으로 교육시켜 전문가로서 양성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FTA 특혜관세 활용을 통한 Data 축적과 회사 자체적으로 FTA 원산지 판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 및 원가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비용절감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원산지 결정 기준 등 FTA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개설 등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FTA 특혜관세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힘써야 한다. 넷째, 향후 추진되는 FTA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입장에서 가장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기준과 원칙을 수렴해서 이를 무역협상시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특히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우리나라의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원산지 증명 간소화를 위한 방안도 협상 전에 미리 마련하여 업계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협상이 타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종합적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때 FTA 협정에 대한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다양하게 체결된 FTA로 인한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FTA를 많이 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과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FTA 체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재검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거대시장과의 교역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강준하, “한-EU FTA 주요쟁점-원산지 규정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 연구 제17집 제1호, 2008, pp.55-81.
- 강진석, 주요국의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창업정보학회지 제9권제4호, 2006. pp.65-89.
- 고영제,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과 시사점”,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8.
- 김석민, “한-중 FTA 이행을 위한 무역구제조항의 비교법적 고찰”, 국제지역연구 제11권제2호, 2007, pp.540-565.
- 김성현-명성준, “우리 정부의 FTA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국가규모 및 발전정도에 따른 전략적 구분”, 국가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pp.55-79.
- 김한성, 조미진, 정재완, 김민성, “한국 FTA 원산지 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8-09, 2008.
- 김형주, “국가간 무역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무역협정의 무역효과”, 국제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2007.
- 노덕률,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에 있어 스파케티보울 현상의 결정요인”, 관세학회지 제11권 제2호, 2010. pp.1-2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9개 기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2010. 10.
- 명진호, “한-칠레 FTA 6주년 평가”, 국제무역연구원, 2010.

- 성윤갑, “원산지 표시제도: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을 통한 평가”, 「정책학원론」, 2008.
- 손기윤, “한-EU FTA의 반덤핑 규정 분석”, 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2009. pp.93-113.
- 심종석(2010), “ FTA 원산지 관리체계 분석을 통한 uTradeHub상 e-C/O 관리시스템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1권제2호, 2010. pp.319-342.
- 안재진, “FTA 체결확대에 따른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과 원산지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4(1), 2008.
-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 (기 체결된 FTA 협정문)
- 전경련, 「경기회복기를 대비한 중소기업 대응전략」세미나 자료집, 2009. 10. 22자 보도자료
- 정인교,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 조사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2009, pp.367-390.
- 최장우, “한-FTA 체결국간 원산지제도 비교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제8권 제4호, 2007.
- 최홍석 · 류원택, 「최신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무역관세연구원, 2004, p.3.
- 한홍렬, “NAFTA 원산지 규정의 의의와 정책시사점”, KIEP, 1994, p.10.
- 허윤, “무역조정지원의 논리적 근거와 경험적 증거”, 국제통상연구 제12권제1호, 2007, pp.29-55.
- Baldwin, R. and Thornton, P. (2008), *Multilateralising Regionalism: Challenges for the Global Trading System*, London: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 Bhagwati, J. N. (2008), *Termites in the Trading System: How Preferential Agreements Undermine Free Tra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hagwati, J.N., (1995), “US Trade Policy : The Infatuation with FTAs. Columbia University Discussion Paper Series 726.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
- Bhagwati, Jagdish, David Greenaway, and Arvind Panagariya, (1998), “Trading preferentially: theory and policy”, *The Economic Journal*, 108: 1128-1148.
- Jagdish Bhagwati, (2003), *Testimony, Subcommittee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Monetary Policy, Trade and Technology, U.S. House of Representatives, Tuesday, April 1.*
- JETRO, “FY2006 Survey of Japanese Firms’ International Operations”. Report, Tokyo. 2007.
- Kawai, M. and Wignaraja, G. (2009), “The Asian Noodle Bowl: Is it Serious for Business?” ADBI Working Paper 136, April (Tokyo: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 WTO : <http://www.wto.org>